

# 국공립 경동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 경동어린이집 원아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2015. 12. 10.

## □ 어린이집 개요

- 어린이집명 : **경동 어린이집**
- 어린이집종류 : 국공립어린이집
- 위 치 :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12길 31(안암동3가 55-2)
- 규 모 : 지상 1층
- 위 탁 체 :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경동교회
- 개 원 일 자 : 2016년 3월 중

## □ 원아모집 안내

- 모집인원 : **39명**
- 신청기간 : 2015. 12. 21.(월) 10:30 ~ 2015. 12. 28.(월) 18:00
- 대 상 : 만1세 ~ 만3세의 취학 전 아동
- 신청방법 :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iseoul.seoul.go.kr/>) 입소대기 신청
- 선정방법 :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자동 결정 및 확인
  - ※ 입소확정시 우선순위 증빙서류 필요(미제출시 입소 제외 됩니다)
- 연령별 모집 인원(39명)
  - 만 1세반(2014. 1. 1 ~ 2014. 12. 31) : 2개반(10명)
  - 만 2세반(2013. 1. 1 ~ 2013. 12. 31) : 2개반(14명)
  - 만 3세반(2012. 1. 1 ~ 2012. 12. 31) : 1개반(15명)- ※ 셔틀버스는 미 운영

## □ 신청방법 문의

- 성북구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강필중 주무관(☎2241-2556)  
전신영 주무관(☎2241-2554)

□ 입소순위

○ 1순위(법 제28조, 시행령 제21조의3, 시행규칙 제29조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최저 생계비의 120%이하)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(장애부모)

<b>&lt;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&gt;</b>
○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
○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

-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-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(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인 영유아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
-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
○ 2순위

- 기타 한부모·조손가족입양된 영유아
- 어린이집 채용중인 아동의 형제자매

□ 입소순위에 따른 구비서류

입 소 순 위 (관련근거 2015년 보육사업안내 P61~64[보건복지부])	구 비 서 류
<b>1 순 위 ( 각 항목별 100점 )</b>	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 100%)	수급자증명서(동 주민센터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	한부모가족증명서(동 주민센터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최저생계비의 120%이하)	의료보험납부 예외확인서 (건강보험관리공단)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(장애부모)	복지카드 장애인증명원(동 주민센터)
-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	시설입소확인서
<b>1 순 위 ( 200점 )</b>	
- 부모 모두가 취업중인 영유아(맞벌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의 정의 : 1일 8시간 이상(정심시간포함) 월20시간이상 근로</li> <li>• 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</li> <li>•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<u>취업을 준비 중인 자</u>(직업훈련생, 대학원생 등) 포함</li> </ul>	<p><b>-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1부(필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터)                     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                   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·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, 고용·임금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※4대보험 서류가 아닌 경우 급여통장 확인</p> <p><b>-사업자(자영업자)의 경우</b>                      : <b>사업자등록증(필수)과</b>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※신규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미만)는 소득신고 접수증(세무서),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(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 중1부                      • 매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                    • 부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</p> <p><b>-취업증명</b>                      • 대학원생 : 재학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• 직업훈련생 :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·수료증(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), 고용안정정보망 구직등록필증(전국고용센터장,새일센터장,자치단체장 명의) 중 1부                      ※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(서류상 확인)</p>
- 「다문화가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	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가족관계증명서(동 주민센터) 귀화시-기본증명서(동 주민센터)
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	가족관계증명서(동 주민센터)
<b>2 순 위 ( 각 항목별 50점 )</b>	
- 기타 한 부모·조손가족, 입양된 영유아	가족관계증명서(동 주민센터)
-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(신규 어린이집 해당 없음)	

※ 1순위 항목당 100점(「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」의 경우 200점),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

※ 다만,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,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